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409
----------	------

제출년월일 : 2010년 01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정이유

-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출연금의 교부와 「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 의거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 새마을운동 조직원의 상해보험 가입 및 사기진작을 위한 제반사항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지원이 불가한 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가능한 대상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를 제정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새마을지도자의 예우 (안 제3조)
 -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표창
 - 불우 새마을지도자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 기타 새마을지도자의 궁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조지원 (안 제4조)
 - 새마을운동 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타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 보험가입 (안 제5조)
 -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붙임

첨 부 1. 제정조례안 1부.

2. 관련법령 1부.

3.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제천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제천시협의회, 제천시 새마을부녀회, 직·공장새마을운동제천시협의회, 새마을문고제천시지부, 새마을 교통봉사대제천지대, 제천시청소년새마을봉사단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란 제1호 새마을운동조직의 지도자이거나 구성회원을 말한다.

제3조(예우) 시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등에 대한 표창
2. 불우 새마을지도자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기타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보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 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타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09.4.1] [법률 제9577호, 2009.4.1, 일부개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제3조 (출연금의 교부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운영재원으로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③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보조금·기부금의 사용·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천시 공고 제 2009 - 1373호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0. 27

제 천 시 장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규 칙 명 :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출연금의 교부와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 새마을운동 조직원의 상해보험 가입 및 사기진작을 위한 제반사항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지원이 불가한 바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가능한 대상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를 제정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새마을지도자의 예우 (안 제3조)
 -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표창
 - 불우 새마을지도자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 기타 새마을지도자의 공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조지원 (안 제4조)

- 새마을운동 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타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 보험가입 (안 제5조)

-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11월 16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 641-5683, FAX (043) 641-5689 담당자 : 원경식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실무관	주민지원팀장	사회복지과장			
원경식	김태순	11/17 최남용			

조례제정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 제정 입법예고에 대하여 공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입법예고 조례명 :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
2. 공고번호 : 제천시공고 제2009-1373호
3. 공고기간 : 2009. 10. 27 ~ 11. 16
4. 공고매체 : 제천시보 및 제천시홈페이지(입법예고)
5. 공고내용 : 별도붙임
6. 공고결과
 - 조회수 : 66명
 - 의견제시자 : 없음

붙임 : 공고(안) 1부.

제 천 시 장 귀하